

제255회 제1차 정례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
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**



2022. 10. 14.

기획행정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56
----------	------

2022. 10. 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2. 9. 7.
- 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9.
- 다. 상정일자 : 2022. 10. 7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전은혜 의원

나. 제출사유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의 변경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
-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(안 제4조)
-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(안 제5조)
-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(안 제6조)
-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2.9. 14. ~ 9. 18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- 의안번호 제1956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 2022년 9월 7일 전은혜 의원이 제안하여 2022년 9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-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“활성화구역”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~제5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,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상시영업상인, 자율상권조합,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을 규정하고,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규정을 두어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, 기존에 있던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 전부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.
- 기존 조례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지역상권

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적 조례에 그침.

-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상권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구역내 각종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,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향후 이 조례안은 지역상생발전 및 자립적 상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, 우리 구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○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